

	명예퇴직및희망퇴직에관한규정	규정번호	3-3-6
		제정일자	2007.02.21.
		개정일자	2023.05.01.
		개정차수	4차
		소관부서	행정지원처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안산대학교(이하“대학”이라 한다.) 교직원의 명예퇴직 및 희망퇴직(이하 “퇴직”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청자격) 퇴직신청자격은 퇴직예정일 현재 대학 정규 교직원(교원은 정년트랙, 직원은 정규직)으로 명예퇴직은 20년 이상 근속한 자, 희망퇴직은 10년 이상 근속한 자로 한다.

제3조(퇴직의 제한) ① 매년 퇴직 신청 마감일 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교직원에게는 퇴직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1. 징계요구 중에 있는 자
2.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에 있는 자
3. 기타 퇴직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② 교직원 수급계획 및 예산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퇴직의 허가 인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3조의2(근속기간의 산정) ① 근속기간은 이사장 발령에 의한 연속된 근무기간을 말한다.

② 근속기간의 산정은 각 호와 같다.

1. 근속연수의 계산은 대학 교직원으로 임용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퇴직한 날이 속한 달까지의 연월수에 의한다.
2. 휴직 및 정직기간은 근속연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4조(퇴직수당) ① 퇴직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퇴직수당의 지급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③ 정년 잔여월수의 계산에 있어서 15일 이상은 1월로 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제5조의1(공고) 대학은 퇴직 신청 개시일 20일 전에 신청기간, 퇴직일 등을 명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의2(퇴직신청) ① 퇴직을 하고자 하는 교직원은 퇴직 신청서[별지1]를 매 학기 개시일(직원의 경우 1월, 7월) 30일 이내에 소속 부서장(교원은 학과장)을 경유하여 교원은 교무처장에게, 직원은 행정지원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퇴직 예정일은 매 학기 말(직원의 경우 6월, 12월)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건강상의 사유로 계속근무가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6조(심의위원회) ① 퇴직허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명예퇴직 및 희망퇴직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교무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수행한다.

제7조(심사·결정) ①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우선순위로 퇴직대상자를 선정한다.

1. 공상 또는 상병으로 장기간 요양을 요하는 교직원 (진단서 첨부)
2. 장기근속 교직원
3. 상위 직급 교직원
4. 기타

② 총장은 퇴직신청서 제출 마감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대상자를 결정한다.

제8조(결정통지) 퇴직 대상자가 결정된 때에는 그 결정사항을 10일 이내에 본인에게 통지한다.

제9조(사직원 제출)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 허가 결정통지를 받은 교직원은 지정된 기한까지 사직원을 교원은 교무처에, 직원은 행정지원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지급시기) 퇴직수당은 퇴직일로부터 1월 이내에 지급한다.
제11조(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7 년 2 월 21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2 년 5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0 년 6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1 년 3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3 년 5 월 1 일부터 시행한다.